

# 주요 경영상황 공시
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15 년 3 월 16 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주식회사 머스트투자자문  
(영문명) Must Investment Advisory  
(홈페이지) <http://mustinvestment.com>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시 강남구 도곡2동 467-14 삼성엔지니어링 12층  
(전 화) 02-578-5080

대 표 이 사 : 김두용, 구은미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경영기획팀장  
(성 명) 박상은 (전 화) 02-578-5080

작 성 자 : (직 책) 매니저  
(성 명) 이지원 (전 화) 02-578-5080

제 출 이 유 :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 2-59 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 조제 3 항, 동법 시행령 제 36 조제 2 항제 1 호바목, 같은 항 제 2 호다목, 같은 항 제 3 호다목 및 같은 항 제 4 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 2-59 조에 의한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49 조제 1 항제 15 호에 의거 5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## 임시주주총회 결과

<p>1. 결의사항</p>	<p>1.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 금융위원회의 분할 승인을 조건으로 상법 제 530 조의 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사업목적 중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사업부문을 보다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물적분할을 하여 주식회사 머스트투자자문(신설회사)를 설립하고 당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머스트홀딩스로 변경하고자 함.</p> <p>2. 영업폐지 승인의 건  제 1호 의안의 분할승인 결과 회사는 분할기일에 분할 대상 사업부문에 대한 일체의 자산 및 부채를 신설회사에 승계하고 더 이상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을 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폐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함.</p>
<p>2. 주주총회 일자</p>	<p>2015년 3월 16일.</p>
<p>3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</p>	<p>본 안건은 금융당국의 승인으로 진행되는 안건임.</p>